

아르헨티나 동수민주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 순 주
울산대학교

이순주(2019), 「아르헨티나 동수민주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0(3), 199-229.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 최초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던 아르헨티나가 남녀동수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남녀동수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여성 살해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그리고 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제거에 대한 요구와 맞물리면서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남녀동수제 도입의 배경과 함께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 그리고 아르헨티나 동수민주주의 도입을 이끈 행위자들의 주요 역할을 분석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남녀동수제 도입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남녀동수제의 대한 반대론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통해 반박하고 설득하였고, 상원여성위원회와 하원여성의원들의 초당적 연대, 그리고 시민사회, 학계 및 국제NGO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가능하였다.

핵심어 여성정치대표성, 남녀동수제, 젠더 할당제, 시민사회, 라틴아메리카

* 이 논문은 한국여성정의 연구보고서 '2019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추진기구 연구'에서 주요 국가사례 중 아르헨티나 사례의 일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 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세심하고 발전적 조언을 주신 익명의 세분 심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I. 들어가며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의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는 의회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상위 10위 국가의 대부분을 유럽이 차지하였지만, 2019년 2월에는 유럽국가로서는 스웨덴만이 5위에 올랐고, 나머지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국가가 차지하였다. 이는 1990년대 여성할당제와 2000년대 이후 남녀동수제를 적극적으로 입법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여성 정치 대표성이 평균 19.16%에서 28.66%로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민주화 이후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사회적 그룹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991년 세계 최초로 여성할당제를 법제화하고 1993년 선거에서 처음 적용하였다. 1995년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를 통해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빠른 수단(fast track)이라는(문경희 2007, 273) 인식이 확산하기 전에 이미 아르헨티나에 도입된 것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 들어 여성할당제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갖는 ‘남녀동수제’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동수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Piatti-Crocker 2019).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동수민주주의는 제10차와 제11차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여성 지역 회의(Conferencia Regional sobre la Mujer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동수민주주의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가족관계 등 사회 전반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재규정하고 역내 각 국가로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 혹은 선거법에 젠더 할당이나 남녀동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남녀동수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여성할당제를 선택했다가 다시 남녀동수제로 변경하였다. 현재 에콰도르(2009), 코스타리카(2009), 볼리비아(2010), 니카라과(2012), 멕시코(2014), 베네수엘라(2015), 온두라스(2016), 아르헨티나(2017), 그리고 파나마(2017) 등 모두 9개국이 남녀동수제를 채택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여성할당제에 이어 남녀

동수제를 통해 이루어진 여성 정치 대표성의 확대가 의회 내에서 논의되는 의제뿐만 아니라 조직까지도 변경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Dosek *et al.* 2017, 1).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동수민주주의는 보편적 인권과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산출에서도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매우 빠르게 라틴아메리카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iscoso 2014).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초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고 지난 2017년에 남녀동수제를 입법화하였다. 2019년 8월 11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국가 수준에서 처음으로 남녀동수제가 적용되었으며 10월에 대선과 총선, 그리고 각 지방 선출직에 대한 선거가 남녀동수제로 실시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르헨티나에서 여성할당제가 남녀동수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상당히 미시적일 수 있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고찰은 동수제 도입과정에서 필요한 설득논리나 행위자간 연대활동의 실제 사례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갖는 구체적인 질문은 아르헨티나에서 1) 여성할당제를 남녀동수제로 변경한 계기와 동수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 남녀동수제를 둘러싼 아르헨티나 사회 내의 찬반논쟁은 어떤 것이었는가? 3) 남녀동수제를 이끌어낸 행위자는 누구이며 그 노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선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로서 여성할당제와 남녀동수제를 기존 논의를 통해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동수민주주의 논의가 본격화된 과정과 남녀동수제가 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에 대한 대응 논리와 남녀동수제 입법화를 위한 정치행위자들의 노력과 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문헌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제 NGO가 발간한 자료, 아르헨티나 국회 홈페이지, 아르헨티나 언론사, NGO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기사와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II.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여성할당제와 남녀동수제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정치대표성에 관한 관심이 급증한 시기는 1980년대 말부터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컸지만, 실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여성정치대표성의 확대를 위한 빠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던 할당제에 대한 요구가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에서 등장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갖게 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까워질 수 있음이 반복해서 강조되었다. 1989년 유럽의회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강조하였고, 1992년 아테네 선언에서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동수민주주의 개념이 논의되었다. 아테네 선언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공식적 평등은 인간존재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평등은 국가행정과 대표에서 동수를 구성하는 것이며 정책과 공공의 결정에서도 동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Declaración de Atenas 1992). 이는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로 대표될 때 사회 내 모든 결정이 민주적으로 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는 여성의 정치적 저 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할당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베이징 여성대회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발칸반도 등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대거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독재, 내전, 쿠데타 등 심각한 정치적 변동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여성이나 여성단체를 포용하는 기회로 작용했다(Dahlerup 2006, 296). 민주주의로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정치 리더에게 할당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시도된 이유는 정당이나 국가가 현대적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화하는 세계에서 국가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할당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회의 등에서 제시한 보고서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세계의 흐름과 같이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민주주의로의 전환기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담론이 상대적으로 열려있으며 국내외 세력들이 선거제도 구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들에서 할당제나 동수제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다(Dahlerup 2006, 11). 할당제 도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세력화에 도움이 되었다(Dahlerup 2006, 295).

할당제와 동수제의 공통점은 정치권력이 불평등하게 여성과 남성에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을 벗어나 정치권력을 성평등한 보편가치에 맞게 배분하고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다(김민정 외 2019, 28). 여성할당제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이자 정치적으로 소외된 그룹으로 보고 여성 정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와 달리 남녀동수제는 남성과 여성이 인구의 절반씩을 구성하므로 당연히 모든 결정에서 동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는, 당연히 권리의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다르다(김은주 2014).

동수민주주의의 개념은 1989년 유럽의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아테네 선언과 함께 유럽 차원에서 공식화되었다. 동수민주주의의 현실적 적용은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여성할당제가 실시되고 있었지만 여성 정치 대표성이 여전히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어 여성할당제가 갖는 한계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도에 모든 선거에서 남녀동수를 규정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남녀동수가 입법화되었고 유럽과 다른 대륙으로 확산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동수민주주의의 개념이 역내 여러 국가들로 확산된 데에는 제10차와 제11차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여성 지역 회의의 역할이 컸다. 이 두 차례 회의에서 제시된 동수민주주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동수민주주의는 좁은 의미로는 선거에서 후보 비율과 선출직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갖는 ‘남녀동수제’를 의미한다. 보다 포괄적으로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결정 과정,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관계 뿐 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까지도 동등하게 대표되고 참여하여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배제를 근절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그리고 권력을 공유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동수민주주의는 선출직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수를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는 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알바이네(Albaine 2015)는 정치적 동수제를 도입 과정에서 부딪히는 장애와 할당제 도입에서 부딪히는 장애가 유사하다고 보았다. 선거제도에서 할당제나 동수제를 정당에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 또한 사회문화적 특성이 큰 영향을 주는데,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매우 전통적이고 가부장적 특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한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에는 젠더에 따른 정치폭력과 남용이 중요한 장애요인이 된다. 추가로 여기에 다양한 종족구성이라는 요인이 더해지게 되면 여성과 원주민 출신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지난 20여 년간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 적용된 할당제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했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출직 여성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으며 선출직 여성비율이 할당비율을 넘어선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Gatto 2017). 크룩(Krook 2017)에 따르면, 할당제의 성과 차이는 각국의 할당제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는 동수제의 도입과 적용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할당제를 적용하기 위해 정당이 지켜야 할 세부 규정들, 예를 들면 명부 내 성별순서의무, 후보자 교체 시 성별지정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의무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정당이 받게 될 불이익 등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선거제도가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라든지, 정당 시스템이 할당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도 중요하다. 셋째, 정책적 의지가 강하고 할당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할당제가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할당제에서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수제와 동수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크룩(Krook 2006)은 할당제를 의회나 정부가 제도화하도록 주도한 것은 시민사회, 국가, 국제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동수제의 제도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시민사회는 할당제나 동수제를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여성운동조직이나 단체, 정당 내의 여성조직, 여성정치인 네트워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민사회가 가장 먼저 남녀동수제를 주장하는 조직적 운동을 시작하고 국가행위자에게 이를 관철하려고 하고 운동전개에 대해 국제적 조직이나 세력의 지원이나 조언을 받기도 한다. 둘째, 국가행위자로는 대통령이나 수상, 정부 내 여성정책전담기관, 정당대표와 국회의원, 사법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행위자는 제도의 설계와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세력들이므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 셋째, 국제사회에는 UN과 같은 전 지구적 단위의 국제기구나 지역 단위의 국제기구와 그 하위기구, 혹은 국제NGO와 초국적 활동가와 학자들의 연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문경희 2007, 280-281). 아르헨티나의 동수제 도입은 이러한 각 행위자 내부의 공감확대를 통한 연대의 강화, 그리고 세 행위자들의 강력한 상호 연대와 지지를 통해 가능하였다.

III. 아르헨티나의 동수민주주의 도입

1. 아르헨티나의 여성 정치 대표성과 여성할당제의 한계

아르헨티나는 마치스모 전통이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진 국가다. 지방 토호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문화가 현재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여성의 교육과 사회진출이 증대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성에 의해 주도되어 오고 있다(손혜현 2009, 359). 아르헨티나 여성정치참여는 1947년 9월 23일 Ley 13.010이 공포되어 여성참정권이 허용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51년에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에바 페론(María Eva Duarte Perón)은 여성페론당(Partido Peronista Femenino)을 창설하고 여성들의 정치 사회적 지위변화를 위해 노력했다.¹⁾ 1951년과 1955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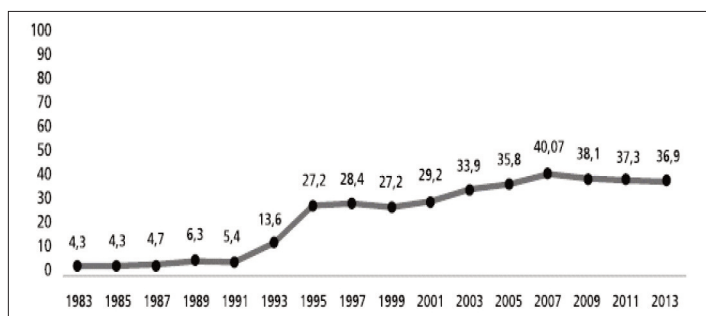
1) 여성만을 당원으로 하는 정당을 창설한 배경은 1) 여성들이 기존의 정치구조에 여성들을 포함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고 2) 에바 페론이 영부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쳐두고 당시 20세기 중반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강력한 여성 리더가 되고자 했었기 때문이었다(Barry 2007).

회에서의 여성 비율이 상·하원에서 20% 내외를 기록한 바 있지만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환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 1946-1955; 1973-74)이 창설한 정의당(PJ:Partido Justicialista)이 집권하고 있던 1952년 당시 정당 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면서 하원의석의 15%가 여성에게 돌아가기도 했다(Alles 2018, 167).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자 의회 내 여성 비율은 다시 급감하였다. 1980년대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내건 여성들의 군사정부 억압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과정에서의 역할이 상당하였다. 1983년의 민주화 이후에도 여성의 의회 내 비율이 바로 개선되지는 않았는데, 이 시기에는 민주화 의제를 즉각적으로 젠더 평등 의제로까지 확대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여성은 끊임없는 정치적 대표성 보장을 요구하였고 1991년 선거법개정(Ley 24.012)을 통해 상·하원 선거에서 후보명부의 최소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였다. 할당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명부를 공식화할 수 없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 법안은 1989년 라디칼(UCR: Unión Cívica Radical)당 소속 상원의원 마르가리타 말아로 데 토레스(Mendoza Margarita Malharo de Torres)가 최초로 제출하였다(Allegrone 2002, 23). 이후 정당 후보명부 내에 같은 성별이 70%를 넘을 수 없으며, 두 명의 같은 성별 후보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성별의 후보 한 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명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순서대로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가로 제출되었다.²⁾

그 결과 이루어진 1994년 선거법 개정으로 Artículo 37은 기회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동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적극 조치를 마련하고 입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바탕을 둔다고 명시하였다. 이 법조항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당선 가능한 순위에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였다. 이를 지키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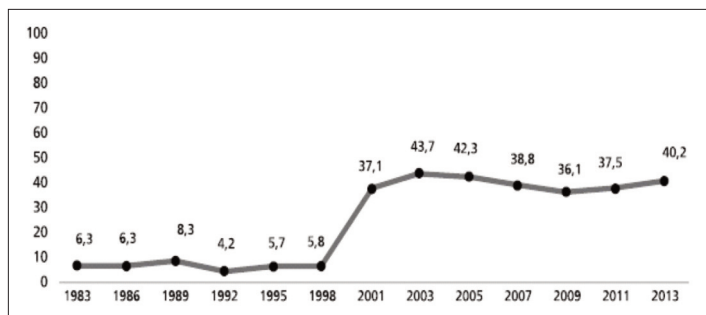
2) UCR 소속의 노르마 알레그로네(Norma Allegrone de Fonte)의원, 마리아 플로렌티나(María Florentina Gómez Miranda)의원, PJ소속의 이네스 보테야(Inés Botella)의원, 기독교민주당(PDC: Partido Demócrata Cristiano)소속 마틸데 페르난데스(Matilde Fernández de Quarracino, Demócrata Cristiano)의원, 블랑카 마세도(Blanca Macedo, UCR)의원 그리고 연방당(Partido Federal)의 루스 몬하르딘(Ruth Monjardin)의원 이 함께 제출했다.

정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지만, 그 결과는 할당 비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이유는 명부 내 순위배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여성을 명부순위에서 가능한 한 뒷순위로 배치하거나 여성이 선출된 후 남성으로 대체하는 등의 꼼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소 고발이 누적되자 2000년 대통령령에 따라 명부 내 순서 의무, 여성이 사임하는 경우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한 상원에서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다음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후 상·하원 모두에서 여성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원에서 여성 비율은 2001년부터 40% 내외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림 1> 하원에서의 여성비율변화(1983-2013)

출처: Toppi, Hernán Pablo(2016)



<그림 2> 상원에서의 여성비율변화(1983-2013)

출처: Toppi, Hernán Pablo(2016)

2. 아르헨티나 동수민주주의 논의의 본격화

국가 차원에서 동수민주주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키토 컨센서스 이후 지방에서 동수제 도입³⁾이 확산하고 있었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이다.

의회 내에서 동수제와 관련한 논쟁이 한창이었던 시기는 2016년 하반기에 들어서이다. 이 시기는 한 16세 소녀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살해 및 폭력 반대 거리시위인 ‘#NiUnaMenos’⁴⁾가 지속하고 있었던 시기와 겹친다. 의회에서 남녀동수제 표결이 진행되었던 2016년 10월 19일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많은 NGO가 중심이 되어 1시간의 여성 파업(Paro Mujeres)⁵⁾을 실시하였다. 이날 시위는 약 10일 동안 13명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들이 이어진 데 대한 심각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여성의원들도 검은 상복을 입고 #NiUnaMenos 문구를 내걸고 1시간 동안의 대규모 여성파업에 동참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3) 남녀동수제는 2000년 9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산티아고델에스테로(Santiago del Estero)주에서 채택하였다. 10월에는 리오네그로(Rio Negro)주, 11월에는 코르도바(Córdoba)주에서 채택되었다. 2016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살타(Salta), 추불(Chubut), 네우켄(Neuquén)에서, 2018년에 카타마르카(Catamarca)주에서 채택했다. 각 주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여성할당제는 1/4, 1/3, 그리고 동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엔트레리오스(Entre Ríos)주 만 1/4을 채택하고 있으며, 8개 주가 1/3, 14개 주가 남녀동수제를 도입하였다.

4) #NiUnaMenos는 ‘더 이상 단 한 명이라도 안 돼’라는 의미다. 2015년 6월 산타페에서 14세의 소녀가 살해당한 후 남자친구의 집 앞마당에 매장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시작되었다. #NiUnaMenos는 여성 살해 및 폭력 반대 시위로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하였다. 매주 수백 건의 폭행과 강간 사건이 있었지만 2016년 10월 7일에 다시 발생한 매우 충격적인 여성 살해 사건이후 이 시위는 대규모로 확산하였다. 16세의 루시아 페레스라는 소녀가 10월 7일 자신의 집에서 두 명의 마약중독자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강간 및 살해당한 사건인데, 사건 이후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이후 많은 예술가와 정치인들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시위를 확산해 나갔고, 코르도바 출신 화가인 로미나 레르다(Lomina Lerda)와 로미나 모이(Lomina Moi)가 여성의 얼굴에 종려나무를 든 손이 들어 있는 심장을 그린 그림으로 이 운동을 상징하는 로고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5) <https://www.rionegro.com.ar/manana-habra-paro-nacional-de-mujeres-reclamando-justicia-por-lucia-perez-EY6089677/>

라틴아메리카 여러 도시로 파급되어 동시에 실시되었다.⁶⁾ 원래의 목적은 여성 살해를 멈추게 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의 남녀동수와 아르헨티나 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제거하라는 요구로 확대되었다. 이는 심각한 여성살해와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뿐 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지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빠른 방법이라는 인식이 공유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의회 내에서 남녀동수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6년 6월 대법원 법관 임명을 두고 사법부에서의 여성 대표성 문제가 대두되면서이다. 당시 대법원 법관 중 여성이 1명뿐이었던 상황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2015-2019) 대통령이 법관 2명을 모두 남성으로 임명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상원여성위원회(Comisión de Banca de la Mujer)가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상원여성위원회는 대법원 구성관련법뿐 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젠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2016년 6월 상원여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골자로 하여 다수의 상원의원이 대법원 구성원 수를 변경하고 동수 원칙을 적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관련 법안을 제시했다.⁷⁾ 상원여성위원회는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동안 정치사회참여와 정책 결정에서의 동수, 국가행정기관과 노조 협회 내 지도부에서의 동수 등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였다.

2016년 10월 19일 상원에서는 동수법안이 57표의 찬성과 2표의 반대로 통과되고 하원으로 넘겨졌다. 반대한 사람은 공화주의 제안당(PRO:Propuesta Republicana)⁸⁾ 소속의 페데리코 피네도(Federico Pinedo)상원의원과 에르테스토 마르티네스 상원의원이었다. 이 법안은 승리를 위한 전선(FPV:Frente

6) <https://www.bbc.com/mundo/noticias-america-latina-37711297>

7) <https://www.senado.gov.ar/parlamentario/comisiones/info/76>

8)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다. PRO는 2005년에 선거연합으로 설립되었으나, 2010년 6월 3일에 하나의 통합된 정당이 되었다. 현재 'Juntos por el Cambio'(전 Cambiemos) 정당연합에 포함되어 있다.

para la victoria)⁹⁾ 소속의 마리아 리오프리오(María Riofrío) 상원의원이 최초 제출한 법안에 추가로 제출된 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상원여성위원회를 통해 여러 정당 소속의 여성 상원의원이 함께 추진한 것이었다(Caminotti 2017, 11).

이날 하원에서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선거 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채택했는데, 이 안은 처음에는 젠더 평등과 관련된 어떤 조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행정부가 제출한 안의 핵심은 투표방식을 종이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몇몇 여성 의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메르코수르 의회(Parlamento del MERCOSUR)¹⁰⁾의원, 상·하원 의원 후보명부 구성에서 동수원칙을 도입했다. 진보 성향의 정당 연합인 남부자유운동(Movimiento Libres del Sur)소속의 빅토리아 돈다(Victoria Donda)의원이 제출한 안이 같은 정당 연합에 소속된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와 같은 남녀동수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캄비에모스(Cambiamos)¹¹⁾에서 이 법안의 상정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것은 캄비에모스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으로 구성된 연합이어서 단일의견을 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2016년 11월 1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omité para la Eliminación de la Discriminación contra la mujer)가 남성과 여성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시에 아르헨티나에도 의회 의석에서 남녀동수법안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여¹²⁾ 의회가 남녀동수제를 채택하는 데 힘

9) 2003년 설립된 중도좌파선거연합. 2017년에는 'Unidad ciudadan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19년 선거에서는 'Frente de todos'로 명칭을 다시 변경하고 선거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가 대통령으로, 그리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h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가 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승리했다.

10) 2006년 12월 14일 관세동맹인 메르코수르가 출범하면서 회원국의 이익을 위한 대의기구로서 의회를 구성하였고, 처음에는 5개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의 현직의원 18명씩으로 구성되었다. 2011년부터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 브라질 37명, 아르헨티나 26명, 베네수엘라 23명, 우루과이 18명, 파라과이 18명의 의원을 각국에서 선출한다. 메르코수르 의회는 회원국에 통합관련정책을 권고하고 회원국 간의 입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11) 2015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을 후보로 선거에서 승리한 보수정당연합이다. 2019년 'Juntos por el cambio'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2) <https://www.tiempoar.com.ar/nota/campana-grafica-mujeresalapolitica>

을 보태게 된다. 이후 2017년 초, 의회에서는 절반이 승인된 두 개의 동수법안이 존재했었다(Caminotti 2017, 11-12). 2017년 11월 22일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11월 23일 새벽에 동수법은 169명 찬성, 5명의 반대로 최종 승인되었다.¹³⁾

3. 아르헨티나 선거제도와 2017년 동수법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연방주의 국가이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총 72명이고 임기는 6년으로 재선 가능하며 2년마다 1/3씩 의석이 갱신된다. 총 24개 선거구(23개 주, 연방수도)에서 인구와 무관하게 선거구 간 형평성을 위해 각 선거구에서 3명씩을 선출한다. 의석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에게 두개의 의석이 배분되고, 두 번째로 많이 득표한 정당에게 나머지 한 개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원은 총 25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으로 재선 가능하며 2년마다 1/2씩 의석이 갱신된다. 폐쇄명부식 비례대표제이며, 정당의 후보명부는 중앙당의 감독을 받아 지방 정당 조직의 리더가 중심이 되어 작성된다. 하원의석은 기본적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주별로 의석이 배분되는데, 인구가 적은 주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5개의 의석은 보장한다. 의석배분은 동트(D'Hondt)방식¹⁴⁾을 따르며 유권자의 최소 3%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배분받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선거제도는 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폐쇄명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으로 제도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13) 대부분의 언론 기사에는 4명으로 되어있으나, 의회에서 공식 공개한 투표결과에 따르면 5명이 반대했다. 반대한 하원의원은 환 카를로스 히오르다노(Juan Carlos Giordano, Frente de Izquierda 소속), 파블로 세바스티안 로페스(Pablo Sebastián López, Fte. de Izquierda y de los Trabajadores 소속), 니콜라스 마리아 마소트(Nicolás María Massot, PRO소속), 엑토르 알베르토 로켈(Héctor Alberto Roquel, UCR소속), 파블로 토렐로(Pablo Torrelo, PRO소속) 등이다. <https://votaciones.hcdn.gob.ar/votacion/3713>.

14) 벨기에 수학자 빅토르 동트가 고안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의석 배분방식의 하나로, 각 정당이 받은 의석당 표의 비율에 최대한 맞추어 의석을 배분하는 최고평균방식의 하나다. 예시는 김수민(2019) 참조.

2017년 Ley 27.412는 선거법에서 Artículo 60을 수정한 것으로, 상원과 하원의원선출, 메르코수르 의회(Parlamento del MERCOSUR)의원선출을 위한 후보명부에 여성과 남성이 명부의 첫 후보부터 마지막 보궐후보까지 여성과 남성을 번갈아가며 위치시켜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어느 성별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수 득표한 명부의 상원의원이 사망, 사임 등 기타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순서에 있는 다른 성별의 후보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후 순위에 있는 같은 성별의 후보로 대체한다. 명부에 더 여성이 없는 상황에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특히 같은 성별후보로만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껏 여러 할당제 적용국가에서 당선된 여성후보를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사전 합의로 사임하게 하고 해당 의석을 다시 남성당원으로 대체하던 편법을 방지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하원과 메르코수르 의원선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보궐로 포함된 의원은 잔여임기 동안 직책을 수행한다.

이러한 남녀동수제는 2019년 처음으로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전면 도입되었다. 2019년 8월 11일 예비선거를 거쳐 10월 27일 대선과 함께 총선에 적용되었다. 2019년에는 하원의원 의석수 1/2(130석)과 상원의원 1/3(24석)을 갱신하는 선거에서 적용되었으며, 2021년 나머지 하원의석과 상원의원 1/3을 갱신하게 된다. 지방선거는 국가선거와 달리 별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데, 올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선거가 예비선거일과 겹쳤다.¹⁵⁾

2019년 8월 11일 예비선거¹⁶⁾를 위해 등록된 각 정당 혹은 선거연합의 명부는 남녀동수제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교호 순번제로 작성되었다. 후보명부 분석에 따르면, 예비선거에 앞서 등록된 후보명부는 상원후보명부에서 동수가 지쳐졌으나 후보명부에서 남성이 먼저인 경우는 78%, 여성이 먼저인 경우는

15) <https://www.clarin.com/tema/paso-2019.html>

16) 아르헨티나에서는 예비선거를 ‘PASO’라고 한다. PASO는 “예비, 공개, 동시, 의무(Primarias, Abiertas, Simultáneas y Obligatorias)”의 첫 알파벳을 딴 것이다. 지방선거와 국가선거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선거로서 각 정당은 같은 직이나 의석을 두고 마지막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22%에 그쳤다. 하원후보명부에서는 52%가 남성 후보, 48%가 여성 후보로 구성되었다. 명부에서 남성이 먼저인 경우는 81.5%, 여성이 먼저인 경우는 18.5%였다.¹⁷⁾

2019년 선거결과, 상원의석의 50.8%와 하원의석의 48.2%가 여성으로 채워져 남녀동수제 도입은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IV. 주요 행위자의 역할

앞서 II 장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남녀동수제를 제도화하도록 주도하는 행위자는 시민사회, 국가, 국제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남녀동수제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수제 반대에 대한 반박

남녀동수제가 통과되기까지 반대와 찬성론의 내용은 매우 다양했다. 이러한 의견들은 라틴아메리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 남녀동수제 입법에 대한 반대는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대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수제 반대와 그에 대한 반박은 의회와 신문 방송 등의 언론 매체, 소셜 네트워크,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정치인, 시민사회대표, 학계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할당제나 동수제에 대한 반대는 자유주의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1) 역량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여성도 선출될 수 있다. 2)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정치가 우선적 관심사가 아니어서 정치적 역량을 갖춘 여성이 적다. 3) 능력중심의 원칙에 위

17) <http://www.argentinaelections.com/2019/07/paridad-radiografia-final-de-las-listas-para-las-paso/>

배되며 오히려 역량을 갖춘 여성에 대해 오히려 평가절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4) 이 제도를 통해 선출되는 여성은 여성만을 대표하게 되며 여성의 정치적 효율성이 지속해서 제한될 것이다. 5)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논리이다.

반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할당제는 1) 여성의 참여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마치 ‘유리천장’을 두는 것과 같다. 2) 여성은 자신이 여성이라서 선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3) 이를 통해 선출된 여성은 역량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제도로 당선된 것으로 낙인되어 정치인으로서 활동에 오히려 제약될 수 있다. 4) 선출되는 여성이 상징적인 인물(tokens)인 경향이 있어 여성의 이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Dhalerup 2006; 문경희 2007, 288에서 재인용).

아르헨티나에서 할당제나 남녀동수제에 대한 반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할당제와 남녀동수제 반대론과 그에 대한 찬성론의 반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대의 입장에서는 여성할당제나 남녀동수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정당의 활동에 대해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캄비에모스(Cambiemos)소속 에르네스토 마르티네스(Ernesto Martínez)상원의원의 인터뷰 내용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동수법에 반대하는 논지의 대부분을 축약한 것이었다. 그는 ‘남녀동수는 파시스트 냄새가 나는 법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즉, 국가가 일률적인 강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에서 특정 그룹을 보호할 수 있는 범주에 둔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편을 차별하는 것이며, 남성에 대한 긍정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적용한다고 해도 일부 의석이 능력과 노력에 부합하는 여성으로 채워질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¹⁸⁾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남녀동수제 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과 같이 구조적으

18) <https://notasperiodismopopular.com.ar/2017/07/10/la-nacion-contraparidad-genero/>

로 다른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동등한 처우를 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남성들이 운영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정치에서도 여성의 출발이 늦었다. 이는 마라톤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한참 먼저 출발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경주에서는 남성이 무조건 이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출발점의 문제는 차이를 무시한 남성 중심사회와 배제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를 수정하는 방법은 긍정적 차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긍정적 차별이 맞서는 대상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차별이다. 포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가 배제하는 그들이며, 불공정한 문화를 수정하며, 소수와 소외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긍정적 차별은 노동, 투표, 교육에의 접근과 같은 기회를 같게 하려고 고안된 것이다.¹⁹⁾ 그러므로 긍정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조치가 없으면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따라서 남녀동수제는 실질적 평등으로 움직이기 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둘째, 반대론에 따르면, 남녀동수제가 시행되면 역량이 부족한 여성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후보가 되고, 당선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역량이 큰 여성이 당선되어도, 역량이 있는 여성이어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남녀동수제 때문에 당선된 것으로 여겨져 해당 여성의 자긍심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반론은 매우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2001년에서 2016년까지 상원에 진출한 여성의 90%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하원의 76%가 남성보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통계는 여성들은 같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남성보다 오히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 대의제 시스템의 논리는 이익의 대표이지, 역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량 있는 여성만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역량만 중시한다면, 엘리트만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제한적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

19) <https://www.infobae.com/opinion/2017/11/24/ley-de-paridad-de-genero-discriminar-para-dejar-de-discriminar/>

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젠더 평등과 역량 간의 잘못된 딜레마를 만들어 내는 것²⁰⁾이라고 반박했다.

셋째, 반대론에서는 이미 정치분야에서 여성대표성은 충분하며 여성이 많으면 업무의 질에도 영향을 주어 성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앞의 에르네스토 마르티네스 의원의 주장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라졌다. 이미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성대통령이 8년이나 집권했고, 부통령과 5명의 주지사가 여성이며, 의회에서도 여성비율은 상당히 높다. 공직에 나서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자질인데, 용감하게 정치에 진출하는 여성에게는 남녀동수제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최악일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조합적 정치조직에서 나오는 것이며, 남성과 여성을 분리한다’²¹⁾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반박은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므로 남성들과 같은 절반의 대표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30%의 할당은 여성들에게는 천정이 되었다. 남성 2명당 여성 1명이라는 할당도 남성이 중심이 되어 명부를 작성하며, 그 과정에서 경쟁하지 않고 의석을 갖고자 하는 남성은 여성 1명의 위치에 올릴 적당한 -역량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여성이 있는지가 또 다른 능력의 하나가 되었다. 여전히 정치는 마키스타 문화가 뿌리 깊다.²²⁾ 또, 업무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주요 회의 및 세션 참석률을 통해 입법 생산성을 가늠해 본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고 법안 제출의 면에서도 여성의 성과가 더 높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하였다. 2001~2016년 사이 남성 결석률 30%, 여성결석률 24%이다. 2013년과 2014년에 제출된 전체 법안의 각각 63%, 52%가 여성이 제출한 것이다.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들이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따라서 의회 내 여성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의회의 생산성을 증대한다²³⁾고 주장하였다.

20) <https://www.pagina12.com.ar/diario/sociedad/3-309124-2016-09-11.html>

21) <https://www.pagina12.com.ar/diario/elpais/1-312215-2016-10-20.html>

22) <https://www.infobae.com/noticias/2017/09/19/la-paridad-de-genero-es-resistida-no-solo-por-hombres-sino-tambien-por-mujeres>

위의 세 가지 반대의견과 반박 외에도 남녀동수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남녀동수입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던 알레한드라 마르티네스(Alejandra Martínez) 상원의원은 ‘평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성들의 경쟁력과 시간 그리고 인내심으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동수에도 달하게 하는 것은 법제도’²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현재 아르헨티나 국립대학 졸업생의 60%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직업에서 심각한 젠더 불평등은 지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주요 정치, 경제 및 사회 분야의 정책결정 직책 10개 중 여성의 비율은 겨우 2명에 불과하며, 여성 할당제가 적용된 의회에서는 여성 비율이 30.6%였지만, 회사나 노조의 정책결정직에는 4-5%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녀동수제는 질적인 평등을 동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남녀동수제 표결에서 반대한 PRO 소속의 페데리코 피네도 의원은 남녀동수제 비율의 비현실성, 비효율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남녀동수제의 비율인 50-50보다 60-40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인위적으로 성별을 50-50으로 맞추기 위해 인선을 하다 보면 역량보다 성별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며, 여성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될 수 있다²⁵⁾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남녀동수제에 대한 찬성보다 더 나아간 의견도 있었다. 솔레다드 소사(Soledad Sosa, Frente de Izquierda Y de los Trabajadores 소속)의원은 동수법을 또 다른 ‘천장 놓기’이며 여성들의 요구를 잘못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노동권과 경제적인 권리에 대한 장벽이 낮추어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남녀동수제는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천장을 놓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이는 소사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후보가 대부분 여성

23) <https://www.pagina12.com.ar/diario/sociedad/3-309124-2016-09-11.html>

24) <https://www.pagina12.com.ar/diario/elpais/1-312215-2016-10-20.html>

25) 피네도 의원은 상원과 하원에서의 여성비율은 각각 44%와 36%에 이르지만, 대부분 위원회의 대표는 남성들이 맡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정치에 마치스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https://www.ambito.com/pinedo-explico-su-rechazo-al-50-50-la-paridad-sexo-no-es-el-unico-tema-la-vida-n3959509>

이기 때문에 이 정당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비율을 낮추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소사의원은 남녀동수제를 넘어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낙태 합법화 등을 포함하는 평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⁶⁾

UCR 소속의 파트리시아 히메네스(Patricia Giménez)의원은 남녀동수법 도입을 여성에 대한 ‘부채상환’이라고 규정하였다. 남녀동수제를 통해 2019년 후보자 명부에서 여성들은 50%를 확보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사법부, 재판소에서도 동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⁷⁾

2. 주요 행위자의 활동과 연대

1) 상원여성위원회(Comisión Banca de la Mujer)

동수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상원여성위원회²⁸⁾의 역할은 매우 컸다. 상원에서 남녀동수에 관한 논의는 대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논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많은 여성 상원의원과 남성 상원의원들이 대법원 구성원의 동수를 제안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개월 후 선거 개혁 논쟁에서 더 확대되어 남녀동수제는 정당지도부의 동수와 국회의원 선거 후보명부의 동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다.

동수민주주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2016년 6월부터 개최된 상원여성위원회의 거의 모든 세션에서 법안이 추가되거나 수정되고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대통령이 대법원 신임법관 2명에 대한 임명을 앞둔 상황에서 2016년 6월 15일

26) <http://www.unidiversidad.com.ar/voces-a-favor-y-en-contra-de-la-ley-de-paridad>

27) <http://www.unidiversidad.com.ar/voces-a-favor-y-en-contra-de-la-ley-de-paridad>

28)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의회에서 1988년 처음으로 여성의원협의회가 창립되었다. 그다음은 아르헨티나에서 2008년에 만들어졌다. 처음 상원여성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졌다가 상설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의회 내에 총 27개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법사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며, 여성위원회(Banca de la Mujer)는 전체 여성의 원으로 한다. 국가 상원규정 내 위원회관련 규정(Art.60)으로 10인이 참석하면 위원회는 개최된다. 소집공지 30분후 회의개최가 가능하며 소집사안에 따라 최소 6명의 참석으로도 가능하다.

열린 위원회에서는 마리아 에스테르 라바도(María Ester Lavado) 의원이 리오 네그로 주에는 주 법원 법관 5명 중 2명이 여성인데, 대법원에서는 수립 이래 현재까지 모두 169명의 전·현직 법관 중 여성이 겨우 3명에 불과했음을 밝히면서 ‘유리천장’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구성관련법에서 동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추가로 행정부 내 젠더 불균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8일에는 ‘국가와 노조에서의 동수 안: 정치사회참여와 정책 결정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동등대표 법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9월 27일에는 기존 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인 Ley 19.945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여성후보가 교체될 때는 선거 전에 작성된 명부에 있는 다른 여성후보로 대체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었다. 이와 함께 명부 구성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안과 선출직에서의 여성할당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도 논의되었다.

하원에서도 다양한 입법 활동과 주요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 등 남녀동수제 입법을 위한 활동들이 이어졌다. 알레한드라 마리아 비고(Alejandra María Vigo) 하원의원이 국제 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다양한 환경에 처한 아르헨티나 여성 현실에서 정치적 남녀동수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선언을 하자는 안(0415-D-2018)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하원문화부(Dirección de Cultura de la Cámara de Diputados)가 중심이 되어 동수법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청취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동수민주주의 건설을 향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MujeresALaPolítica캠페인²⁹⁾의 주최 측과 대통령 여성자문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s Mujeres), 남부여성(Mujeres del Sur), 과학기술진흥원(CONICET)등 연구기관과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이 워크숍을 통해 ‘동수민주주의’의 개념과 아르헨티나 여성의 정치참여, 공직과 선출직에 대한 접

29) ‘여성들을 정치로’라는 제목의 캠페인이다.

근과 대표성의 동등 등에 관한 논의가 한층 더 확산하였다.

이와 같은 상원여성위원회와 하원여성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초당적인 연대는 의회 내에서 남녀동수제 통과를 위해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의원들의 연대는 또한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를 통해 강화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었다.

2) 국내외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

아르헨티나의 여성시민사회는 강력한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는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남녀동수제 입법을 지지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개의 해시태그#가 등장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반대에서 이어진 해시태그는 남녀동수제 입법이슈로 연결되었다. 그 흐름은 #NiUnaMenos(단 한명도 안 돼)에서 시작되어 #MujeresALaPolitica(여성들을 정치로), #UnayUno(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 #ParidadYa(이제는 동수), #50-50으로 이어졌다.

특히 #MujeresALaPolitica 캠페인은 2016년 동수제에 반대하고 있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며칠 앞두고 시작되었다. 상원에서 동수 법안이 승인됐지만,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 내용에 대해 고의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2017년 3월 초부터 국제사면기구(International Amnesty) 아



〈그림 3〉 #MujeresALaPolitica 그래픽 캠페인

출처: <https://www.tiempoar.com.ar/nota/campana-grafica-mujeresalapolitica>

르헨티나 지부와 ELA(Equipo Latinoamericano de Justicia y Género, 젠더와 정의 라틴아메리카기구)가 함께 남녀동수제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림 3>과 같이 그래픽을 활용한 두 단체의 공동 캠페인은 과격적인 방식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남녀동수제 이슈를 파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남녀동수제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남성의원의 얼굴 사진에서 빨간빛 립스틱을 바른 여성의 입으로 바꿔 의사당 부근에 지속해서로 게시하였다. “여성 한 명의 목소리와 남성 한 명의 목소리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우리 여성들은 진보하고, 정치는 그렇지 않다(La voz de una mujer tiene el mismo valor que la de un hombre. Las mujeres avanzamos, la política No.)” 라는 이들의 메시지는 동등한 남녀 대표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 ELA의 대표인 파올라 레이(Paula Rey)는 아르헨티나는 여성할당을 선구적으로 법제화한 국가이지만, 25년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여성할당은 여성들에게 오히려 ‘콘크리트 천장’이 되고 말았으며 의회 내 여성 비율을 ‘완전한 정제’ 상태라고 진단하고 캠페인을 시작했다.³⁰⁾ 두 단체는 남녀동수제를 요구하는 표제어로 ‘#UnayUno’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평등여성재단(M.E.I: Fundacion Mujeres en Igualdad)³¹⁾도 예전에는 여성할당제를 요구하였고, 이후 남녀동수제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2013년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하원의원 중 젠더 평등과 관련된 권리를 옹호하는 15명의 여성하원의원에 대한 재선운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에 여성할당제를 엄격하게 지킬 것과 더 나아가 동수를 받아들이 것을 요청하였다. M.E.I는 여성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캠페인을 자문을 하기도 했다. 또, 여성의원들이 당선되고 의회 내에서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30) <https://www.tiempoar.com.ar/nota/campana-grafica-mujeresalapolitica>

31) 1990년 3월 창설되어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으로 활용한 페미니스트단체이다. 2005년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자문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여성 차별과 젠더 폭력에 대한 투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역량 강화와 참여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이 주요 활동목적이다.

고 보았다. M.E.I는 젠더 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 강화세미나, 권력과 리더십 워크숍 등을 개최해 왔다.³²⁾

특히 전국여성대회(ENM: Encuentro Nacional de Mujeres)도 남녀동수제에 대한 요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ENM은 198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매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어 오고 있다. 이는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는 세계 유일의 전국 규모 여성대회³³⁾이다. 동수제가 되기 직전 해였던 2016년에는 산타페 주의 로사리오에서 31차 대회가 개최되었고 7만 명이 참여하고 69개 세션이 열렸다. ENM은 아르헨티나 내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구체화하는 하나의 커다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31차 ENM에서는 마르셀라 두리에우(Marcela Durrieu) 하원의원이 동수에 관한 패널의 좌장을 맡았고, 크리스티나 알바레스 로드리게스(Cristina Alvarez Rodríguez) 하원의원, 산타페 주의 지방 상원의원 실비아 아우스부르헤르(Silvia Augsburg) 등이 참여하였다.³⁴⁾ 2017년 32차 ENM에서도 남녀동수제는 주요 의제 중 하나였고, 사회당 대표인 베로니카 마그니(Verónica Magni)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하원에서 남녀동수제 표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 ‘동수 투쟁은 평등 투쟁(militar paridad es militar igualdad)’이라고 하면서 지방에서 시작된 남녀동수제를 국가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여성할당제 때문에 의회에서 여성과 관련한 이슈를 더 많이 다룰 수 있었는데, 남녀동수제가 된다면 더욱 더 가능해 질 것이라는데 공감했다.³⁵⁾

32) <https://www.mujeresenigualdad.org.ar/mujer-y-pol%C3%ADtica.html>

33) 보통 3일간 개최되며, 참가자가 경제적 조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전 신청자에게 무료숙박과 무료식사가 제공된다. 각 세션은 아르헨티나의 여성 관련 세부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션에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 세션들에서는 조용히 듣기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의 결론은 투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좌장은 진행을 돕는 코디네이터로 역할하며, 서기를 정하여 논의된 내용을 기록하고 세션 종료 시에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본부에 제출한다. 본부는 이를 취합하여 발간한다.

34) <http://www.elcomercioonline.com.ar/articulos/50076460-Marcela-Durrieu-cerro-el-panel-de-Paridad-del-Encuentro-Nacional-de-Mujeres.html>

3) 행정부와 사법부

멕시코와 볼리비아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남녀동수제 도입에 주도적이었던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행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5년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금지에 관한 협정이 Ley 23.179로 의회에서 비준되면서 여성차별문제가 공론화되었다. 1987년 라울 알폰신(Raúl Ricardo Alfonsín, 1983-1989) 정부에서 보건 및 사회활동부 산하 인간과 가족 개발청(Subsecretaría de Desarrollo Humano y Familia) 산하에 국가여성국(Dirección Nacional de la Mujer)이 창설되어 여성정책을 전담하였다. 1992년 카를로스 메넴(Carlos Saúl Menem Akil, 1989-1999)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여성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Mujer)로 변경되었다가 2017년 국가여성원(Instituto Nacional de la Mujer)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사회개발부 산하기구로 편입되었다.

아르헨티나 여성 정책전담기구의 위상은 행정부 내에서 상당히 낮다. 따라서 해마다 배정되는 예산도 매우 적어 실질적인 정책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민사회로부터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위상을 승격시키고 예산을 확충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지만³⁶⁾ 실현되지 않았다.

한편, 사법부에서는 2009년 대법원 내에 여성사무국(Oficina de la Mujer CSJN)을 설치했다. 사법부 내 모든 계획과 내부 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포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이후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젠더 평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1년부터 ‘사법부 젠더 지도(Mapa de género de la Justicia)’³⁷⁾를 작성해오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국가와 지방 법원, 검찰, 대법원 등에서 직위별로 여성과 남성의 수와 비율을 공개하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와도 비교자료를 제공하여 국가조직에서의 동수민주주의 실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35) <http://entrieriosahora.com/dos-candidatas-en-el-encuentro-de-mujeres/>

36) <http://feim.org.ar/2011/04/13/propuestas-en-diputados-para-terminar-con-la-violencia-hacia-mujeres-y-ninas/>

37) <https://om.csjn.gob.ar/mapagenero/login/mostrarLogin.html>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동수민주주의가 도입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의회 내 여성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은 할당제에서 동수민주주의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여성 회의로 대표되는 역내 국가들의 여성 정책에 관한 교류의 노력과 강력한 연대, 그리고 각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노력이 그 바탕이 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그 흐름 속에 있다.

아르헨티나가 세계 최초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지만, 그 효과는 정치 분야에만 국한되었고 여성할당제에서 정한 비율은 여성 정치 대표성의 ‘천장’이 되었다. 여성할당제의 효과가 매우 미미했던 지방에서는 각 주에 적용되는 선거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지방에서 먼저 적극적인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방법인 남녀동수제를 채택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국가 수준의 동수민주주의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은 여성 살해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모든 제도와 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법관의 수에서 보였던 젠더 불균형의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미약한 대응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녀동수제의 도입은 사회 내 젠더 불평등 제거의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입법부 뿐 만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에서도 동수민주주의를 확보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아르헨티나 남녀동수제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 동수제를 지지하는 정치행위자의 상호연대가 공고한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의 남녀동수제 입법은 상, 하원여성의원들의 정당과 정파를 넘어선 연대와 상호소통, 그리고 그러한 연대와 소통을 사회적으로 확장한 성과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성상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많은 회의를 거쳐 현재의 동수

법을 만들어 냈다. 하원에서도 이러한 동수법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민사회와 함께 전개하였다. 이러한 연대는 여러 민간연구단체와 여성단체, 국제NGO와의 상호 협조와 연대로 확장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동수민주주의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설득은 끊임없는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만들어 내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확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 동수민주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은 국제기구, 역내 국제회의 등에서 제시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인식은 정치인, 학계, 여성단체, 국제NGO, 국제기구가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하며 공유하였다. 또한 문화적인 보수성으로 나타난 비논리적인 반대에 대한 근거에 대해구체적인 대응 자료를 제시하면서 언론을 통해 알리는 활동도 남녀동수제 입법에 긍정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참고문헌

- 김민정 외(2019),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추진기구 기초 연구」, 한국여성의정.
- 김수민(2019), ‘준 연동형 비례제 어렵다? 해외선거엔 ‘수학’이 판친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9>
- 김은주(2014), “남녀동수와 여성할당제, 무엇이 다른가,” 여성신문 (2014.2.14.)
- 문경희(2007), 「여성과 정치 그리고 할당제: 국제적 동향과 쟁점」, 페미니즘 연구, Vol. 7, No. 1, pp. 273-300.
- 손혜현(2009), 「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 아르헨티나 여성할당제 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 49, No. 1, pp. 353-373.
- Albaine, Laura(2015), “Obstáculos y Desafíos de la paridad de género: Violencia política, sistema electoral e interculturalidad,” *Ícono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o. 52, Quito, mayo. pp. 145-162.
- Allegrone, Norma(2002), *Ley de cupo femenino. Su aplicación e interpretación en la República Argentina*, Buenos Aires: FUNDAI Fundación para el Desarrollo en Igualdad y Friedrich Ebert Stiftung.
- Alles, Santiago(2018), “Equilibrar el terreno: instituciones electorales e

- incorporación de Mujeres en las legislaturas provinciales en Argentina,” Freidenberg, Flavia(eds.), *Mujeres en la Política. Experiencias nacionales y subnacionales en América Latina*, Ciudad de México: Instituto Electoral de la Ciudad de México; Universidad Autónoma de México, pp. 167-192.
- Archenti, Nérida(2014), “El proceso hacia la paridad en América Latina. Argentina y Costa Rica, experiencias comparadas,” *Revista de Derecho Electoral*, Vol. 17, Enero-Julio, Tribunal Supremo de Elecciones República de Costa Rica, pp. 304-332.
- Barry, Carolina(2007), “El Partido Peronista Femenino: la gestación política y legal,” *Nuevo Mundo*, <https://journals.openedition.org/nuevomundo/12382#entries>
- Caminotti, Mariana(2017), *La paridad política en Argentina: avances y desafíos, Programa Naciones Unidas para el Desarrollo – PNUD*; Lima: IDEA Internacional; Panamá: Organiz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 CEPAL(1999), “Participación, Liderazgo y Equidad de Géner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https://repositorio.cepal.org/bitstream/handle/11362/3236/S9900675_es.pdf?sequence=1&isAllowed=y
- Dahlerup, Drude(ed.)(2006), *Women, Quotas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 Dosek, Tomas(ed.)(2017), *Women, Politics, Democracy in Latin Americ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atto, Malu A.C.(2017), “The Variation of Quota Designs and Their Origins in Latin America(1991-2015),” Tomas Dosek(ed.), *Women, Politic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rook, Mona Lena(2006), “Campaigns for Candidate Gender Quotas: A New Global Women’s Mo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20th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IPSA) Congress, 9-13 July, Kukuoka.
- Krook, Mona Lena(2017), “Electoral Quotas and Beyond: Strategies to Promote Women in Politics,” Tomas Dosek(ed.), *Women, Politic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Piatti-Crocker, Adriana(2019), “The Diffusion of Gender Policy in Latin America: From Quotas to Pa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Women’s*

Studies, Vol. 20, No. 6, pp. 44-59.

- Toppi, Hernán Pablo(2016), “Políticas públicas y derechos políticos: Del voto femenino a las cuotas de género como respuestas a los problemas de representación política de las mujeres en la Argentina,” *Revista Perspectivas de Políticas Públicas (Enero-Junio)*, Vol. 7, No. 10, pp. 87-120.
<http://entreriosahora.com/dos-candidatas-en-el-encuentro-de-mujeres/>(검색일: 2019.05.01.)
<http://feim.org.ar/2011/04/13/propuestas-en-diputados-para-terminar-con-la-violencia-hacia-mujeres-y-ninas/>(검색일: 2019.05.31.)
<http://www.argentinaelecciones.com/2019/07/paridad-radiografia-final-de-las-listas-para-las-paso/>(검색일: 2019.08.06.)
<http://www.condistintosacentos.com/mujeres-parlamentarias-en-america-latina-y-el-caribe-exigencias-y-equilibrios/>(검색일: 2019.05.31.)
<http://www.elcomercioonline.com.ar/articulos/50076460-Marcela-Durrieu-cerro-el-panel-de-Paridad-del-Encuentro-Nacional-de-Mujeres.html>(검색일: 2019.05.31.)
<http://www.unidiversidad.com.ar/voces-a-favor-y-en-contra-de-la-ley-de-paridad>(검색일: 2019.05.31.)
https://conferenciamujer.cepal.org/13/sites/default/files/pages/files/what_is_the_regional_conference_on_women_in_latin_america_and_the_caribbean_ver_oct_2016.pdf(검색일: 2019.05.17.)
<https://notasperiodismopopular.com.ar/2017/07/10/la-nacion-contra-paridad-genero/>(검색일: 2019.05.17.)
<https://oig.cepal.org/es>(검색일: 2019.05.17.)
<https://om.csjn.gob.ar/mapagenero/login/mostrarLogin.html>(검색일: 2019.05.17.)
<https://votaciones.hcdn.gob.ar/votacion/3713>(검색일: 2019.05.31.)
<https://www.ambito.com/pinedo-explico-su-rechazo-al-50-50-la-paridad-sexo-no-es-el-unico-tema-la-vida-n3959509>(검색일: 2019.05.31.)
<https://www.argentina.gob.ar/sites/default/files/ope-doc1-paridad.pdf>(검색일: 2019.06.10.)
<https://www.bbc.com/mundo/noticias-america-latina-37711297>(검색일: 2019.05.17.)

- <https://www.bbc.com/mundo/noticias-america-latina-42406642>(검색일: 2019.05.17.)
- <https://www.cij.gov.ar/nota-34156-Rosatti-se-reuni-con-representantes-de-la-ONG-Ojo-Paritario-.html>(검색일: 2019.05.31.)
- <https://www.cippec.org/wp-content/uploads/2017/03/1986.pdf>(검색일: 2019.05.17.)
- <https://www.clarin.com/tema/paso-2019.html>(검색일: 2019.08.15)
- <https://www.infobae.com/noticias/2017/09/19/la-paridad-de-genero-es-resistida-no-solo-por-hombres-sino-tambien-por-mujeres/>(검색일: 2019.09.25.)
- <https://www.infobae.com/opinion/2017/11/24/ley-de-paridad-de-genero-discriminar-para-dejar-de-discriminar/>(검색일: 2019.09.28.)
- <https://www.infobae.com/sociedad/2019/05/09/saltar-la-grieta-mujeres-de-todos-los-partidos-van-a-fiscalizar-que-se-cumpla-la-paridad-en-las-elecciones/>(검색일: 2019.07.01.)
- <https://www.mujeresenigualdad.org.ar/mujer-y-pol%C3%ADtica.html>(검색일: 2019.06.20.)
- <https://www.pagina12.com.ar/diario/elpais/1-312215-2016-10-20.html>(검색일: 2019.06.10.)
- <https://www.pagina12.com.ar/diario/sociedad/3-309124-2016-09-11.html>(검색일: 2019.06.10.)
- <https://www.rionegro.com.ar/manana-habra-paro-nacional-de-mujeres-reclamando-justicia-por-lucia-perez-EY6089677/>(검색일: 2019.06.10.)
- <https://www.senado.gov.ar/parlamentario/comisiones/info/76>(검색일: 2019.06.10.)
- <https://www.tiempoar.com.ar/nota/campana-grafica-mujeresalapolitica>(검색일: 2019.07.01.)

이 수 주

울산대학교
letilee@ulsan.ac.kr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3일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arity Democracy in Argentina

Soon Joo Lee

University of Ulsan

Lee, Soon Joo(2019),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arity Democracy in Argentina",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3), 199-229.

Abstract In Latin America, the concept of parity democracy is rapidly spreading to each country and expanding to the adoption of gender parity legislation. The concept of parity democracy has expanded as a forming part of human rights in Latin America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arity legislation is recognized as the beginning of a qualitative democracy by eliminating all inequalities experienced by women i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gender parity legislation in Argentina,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introduce a gender quota system. Regarding this, the introduction of gender parity legislation seems somewhat delayed. In Argentina, demand to stop femicide and violence against women was combined with demands to eliminate all gender inequality in society. The paper reveals the importance of forming consensus and establishing concrete strategies in Argentina, an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solidarity, and communication with civil society by legislators beyond political factions for the adoption of parity legislation.

Key words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Gender Parity, Gender Quota, Latin America